

배포 일시	2022. 10. 6.(목)		
담당 부서	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	책임자	과 장 정수호 (044-201-3988)
		담당자	사무관 박선동 (044-201-4133) 주무관 이호상 (044-201-3960)
보도일시	2022년 10월 7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0. 6.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도시철도 유휴공간이 생활물류 거점으로 활용된다

- 7일부터 도시철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「모빌리티 혁신 로드맵('22.9)」에서 제시한 도시철도 물류 서비스* 도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등 「도시철도법 시행령」, 「도시철도법 시행규칙」, 「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」 개정안을 10월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.

* 도시철도망을 활용한 화물 자동차 - 화물 지하철 연계 물류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'생활물류체계 첨단화' 연구개발 진행 중('21~'27)

- 이번에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도시철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< 도시철도법 시행령 >

- ① 도시철도 운영자가 물류부대사업을 위해 도시철도 차량기지 등에 설치하는 물류시설이 명확하게 '도시철도시설'에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.
 - 이를 통해,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없이도 물류부대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도시철도 운영자가 '도시철도시설'에 택배분류장, 창고 등 물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.

- ② 철도 물류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의 사례를 참고하여, 도시철도 운영자도 ①도시철도 운영이나 ②도시철도와 타 교통수단과 연계수송을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③도시철도시설 등 소유 자산을 이용하여 물류부대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.

<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>

- 도시철도 운영자의 반복적인 의무위반에 대한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, 가중처분의 적용시점을 ‘최초 행정처분일’에서 ‘최초 위반 행위가 적발된 날’로 개선한다.

<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>

- 현재 복선선로를 운행하는 노면전차(트램)는 우측 통행을 원칙으로 하되, 선로 또는 노면전차가 고장난 경우, 사고 등 복구를 위해 운행되는 차량이나 공사를 위해 운행되는 차량의 경우,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한 후 좌측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.
- 이에 대해, 일반적인 도시철도와 같이 좌측 통행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*되어,

* 제3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('22.8) 개선과제

-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차량기지 내에서 운전하는 경우, 시험운전하는 경우, 사고 등으로 인한 일시적으로 단선운전하는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예외적으로 좌측 통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.

□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(<http://www.molit.go.kr>)의 “정보마당/ 법령정보/입법예고·행정예고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,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* 의견제출처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5동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
전화: 044-201-4133, 3960, 팩스 044-201-5596

